

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

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무감사)

① 감사실시 개요

- 감사기간 : 2010. 12. 13. ~ 12. 24. (10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담당 사무관 외 4명
- 주요 감사사항
 -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
 - 출연금 등 수입금 관리실태
 - 물품구매·관리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업무 수행실태 등

② 기관 현황

- 조 직 : 1실 1사업단 8본부 9지역본부 2미디어센터
- 정 원 : 218명
- 설립근거 : 전파법 제66조
- 주요사업
 -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연구
 -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조사 및 분석
 - 전파·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
 - 무선국 검사·자격검정·전자파 측정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

③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

제목	지적내용	처분요구사항
① 전파광장 추진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'07. 8월 '동교동 전파광장 조성계획'을 수립하여 위탁업체(♠♠♠♠)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울지사 사옥의 야외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추진 ◎ 사업 추진방안 및 행정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파광장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경쟁,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베틀신문 광고 게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정당한 계약절차 미이행 ◎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해 부대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등 인허가절차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잦은 민원제기와 소송 발생 야기 	기관경고 주의 6명
② 계약업무 및 자산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사무집기 구매 계약업무 부적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08. 12. 31.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집기 구매(3,741개 778백만 원) 시 특정업체 제품(◇◇◇◇◇)을 선정하고자 1억 원 미만으로 구매내역을 하향 분리하여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• '09. 1월부터 '10. 6월까지 사무용 집기를 구매하면서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(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) 체결 	경고 5명 주의 1명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제안서 평가기준 부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부재 • 제안서를 평가할 때마다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위원회 구성·운영 ◎ 수의계약 체결기준 변경 미승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재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 규정인 「예산회계규칙」의 수의계약 체결 예외 조항 변경 ◎ 공사계약 낙찰자결정방법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계약의 경우 '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공사계약 44건에 대해 '최저가격의 입찰자'를 낙찰자로 결정 ◎ 선금 지급사무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조건을 명시하고, 잔금지급 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아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◎ 자산 및 물품 관리 부적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산관리책임자는 불용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자산 3,534건에 대해 자산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용 처분 	
--	---	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등 부적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퇴직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설립된 ◎◎◎◎와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및 유지보수 계약('05.4.1.~'10.3.31.)과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0. 3. 31.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 유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계약 미체결 • 정보시스템 470식이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유지보수계약이 필요한데도 ◎◎◎◎와의 계약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'10. 12월 현재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 장비 운용 	<p>기관 경고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 연구사업 추진 부적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자체 위탁연구사업 추진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연구사업 정산 시 비목별 타용도 유용 및 정산서류타당성, 목적외 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, 연구비 사용실적 증빙서류 대신 수행기관의 자체감사의견서를 받는 등 위탁연구사업을 부실하게 관리 • 연구기간을 당해 연도에 종료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다음해까지 추진되도록 연구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(6건)하고,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최종평가 및 연구비 잔금을 지급(4건)하는 등 관리·감독 부적정 ◎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내 비목간 예산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인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9건의 사업이 적법한 신고 없이 사유서 등을 통해 임의 처리 등 	<p>경고 2명</p>

<p>⑤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</p>	<p>◎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09. 1월부터 '10. 10월까지 92,246천원의 세출예산에 대해 공기구비품비로 구입하여야 할 LCD TV 등을 사업운영비로 구입하고, 정당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정적하게 예산 집행 <p>◎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되어 환수되는 사례 발생 	<p>경고 3명</p>
<p>⑥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절차 부적정</p>	<p>◎ '09. 11월 기획조정실장(임원대우) 및 책임급(2~3급)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간부직 채용이라는 이유로 직급별 채용 기준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거나, 자격 기준을 통합 또는 완화하여 채용공고를 하는 등 부당하게 관련규정 변경</p> <p>◎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인재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'09. 3월 ○○○○○○○○센터의 경우 계약직 직원 2명 채용 시 위원 5명 모두 내부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인재선발시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·운영</p>	<p>주의 3명</p>
<p>⑦ 예산 집행 부적정</p>	<p>◎ 사전에 지출발의를 하지 않고 간행물 등 구입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정적하게 집행</p>	<p>통보</p>
<p>⑧ 법인카드 실명 서명 소홀</p>	<p>◎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이 아닌 기관명으로 서명하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서명을 하는 등 법인카드 실명 서명 소홀</p>	<p>통보</p>